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85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이용우·박해철·정혜경

박지원 • 이수진 • 김태선

김 유 · 이광희 · 이강일
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2년 3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공공기관운영법)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,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'공공기관 노동이사제'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.

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(제26조제4항), 개별법에 별도의 추천 절차가 규정된 준정부기관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.

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 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,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 히 별도 항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.

이에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

험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,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 조제3항). 법률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이 경우"를 "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,"로, "하되,"를 "하되"로 하고, 같은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(임원) ①・② (생 략)	제16조(임원) ①・② (현행과 같		
	승)		
③ 비상임이사(제4항에 따라 당	③		
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			
람은 제외한다)는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			
에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			
법률」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			
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. <u>이</u>	<u>o</u>]		
<u>경우</u>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	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		
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<u>하되,</u>	명을 포함하여야 하며,		
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	<u>하되</u>		
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			
하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4.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		
	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		
	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		
	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		
	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		
	<u>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</u>		
	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		
	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		
	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		

	사람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